

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89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1. .
제안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·시행('20.7.1. 공포, '20.7.2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대구사랑상품권 종류, 권면금액 등 발행 관련 세부기준 마련
(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)
- 나. 가맹점 등록 간주조항 삭제 및 등록절차 마련(안 제9조제3항)
- 다.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에 따라 “운영대행사”를 “판매대행점”으로,
“운영대행”을 “판매대행”으로 문구 수정(안 제2조부터 제14조까지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- 나. 관계법령: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(붙임)
- 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라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0. 11. 10. ~ 11. 30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- 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아님
- 3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: 개선의견 없음
- 5) 갑질영향심사: 개선의견 없음
- 6)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대구사랑”을 “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사랑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“운영대행사”란”을 ““판매대행점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상품권의 명칭은 대구행복페이로 한다.
- ④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상품권이며, 시장은 필요에 따라서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.
- ⑤ 카드상품권은 권면금액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상품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 중 “대구광역시”를 “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운영대행의 협약 등)”을 “(판매대행의 협약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“대구광역시”를 “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운영대행”을 각각 “판매대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“운영대행사는”을 각각 “판매대행점은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운영대행사 선정)”을 “(판매대행점 선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 중 “운영대행사를”을 “판매대행점을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운영대행사”를 “판매대행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③ 시장은 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,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지역경제 활성화, 통신판매중개의 전문성 확보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.

제11조제3항 중 “대구광역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”을 “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운영대행사”를 “판매대행점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을 “사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<u>대구사랑</u>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</u>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<u>대구사랑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“운영대행사”</u>란 대구사랑 상품권의 발행·보관·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·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. 3.·4. (생략) 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“판매대행점”</u> 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3.·4. (현행과 같음)
<p>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상품권의 권면 금액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상품권의 명칭은 대구행복페이로 한다.</u></p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5조(유통지역)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대구광역시 일원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대행의 협약 등) ① 시장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발행·보관·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 운영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면, 그 지정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상품권이며, 시장은 필요에 따라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.

⑤ 카드상품권은 권면금액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상품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유통지역) -----
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

-----.

제6조(판매대행의 협약 등) ① ---

-----.
----- 시 -----
-----.

② ----- 판매대행-----

----- 판매대행-----
-----.

③ 판매대행점은 -----

-----.

④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시장이 정한 일정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⑤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발행 등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대행사 선정) 시장은 상품권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8조(상품권의 훼손 등) ① (생략)

② 상품권의 금액 등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운영대행사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만큼 재발급 받을 수 있다.

제9조(가맹점의 등록) ①·② (생략)

④ 판매대행점은 -----

-----.

⑤ 판매대행점은 -----

-----.

제7조(판매대행점 선정) -----
----- 판매대행점을 -----
-----.

제8조(상품권의 훼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판매대행점-----
-----.

제9조(가맹점의 등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과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한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(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)는 가맹점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.

④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가맹점 등록의 취소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4조(대구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설치) 시장은 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대구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,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지역경제 활성화, 통신판매중개의 전문성 확보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.

<삭제>

제11조(가맹점 등록의 취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시 -----
-----.

제14조(대구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설치) -----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-----

-----.

1. (생략)

2. 운영대행사 운영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3. (생략)

제15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

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·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~ 4. (생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판매대행점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사람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2. “판매대행점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사랑상품권의 보관·판매·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.

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-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-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, 권면금액,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6조(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)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-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가맹점을 하고자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
3.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-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,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8조(가맹점 등록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
2.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3.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

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조(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) 법 제10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.

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대구사랑상품권 종류 및 발행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상위법령 용어 정의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.

4. 작성자 : 경제국 경제정책과장 성임택